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시제기 시험비행 소음에 대한 보상 규정 마련〉  
■ 양문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445호)

2026. 3.

국 방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문 성 환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2 |

##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양문석 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6. 1. 30.
3. 회부연월일 : 2026. 2. 2.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용비행장에서 군이 운용하는 항공기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규정함으로써, 인근 지역 주민들이 겪는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적절히 보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피해 보상의 대상을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군용항공기로 한정하고 있어, 군용항공기 사업을 위해 시험 운용되는 시제기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음.

이에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용항공기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사업관리기관이 연구·시험 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항공기(시제기)를 소음 피해 보상 대상에 포함시켜, 군용비행장 인근 주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형평성 있는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군용항공기의 정의에 시험평가를 위한 시제기도 포함하여 소음피해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호).

#### [개정안 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br>1. “군용항공기”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u>군용항공기</u> 를 말한다.<br><br>2. ~ 6. (생략)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br>1. “군용항공기”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u>군용항공기 및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용항공기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같은조 제5조에 따른 사업연구기관이 연구·시험 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항공기</u> 를 말한다.<br><br>2. ~ 6. (현행과 같음) |

- 현행법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용항공기<sup>1)</sup>에 의한 소음피해만을 보상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1)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용항공기”란 군이 사용하는 비행기·회전익항공기·무인항공기·비행선(飛行船)·활공기(滑空機), 그 밖의 항공기기를 말한다.  
2.~4. (생략)

□ 그런데 군용비행장에서는 전투기 비행뿐만 아니라 한국형 전투기 KF-21과 같은 무기 개발을 위한 시험평가 비행도 함께 진행되고 있음. 시험평가 비행은 전투기로서의 성능을 측정하고자 전투기와 동일한 기동을 하므로 소음 유발 수준도 전투기와 유사하나, 시험평가 비행으로 인한 소음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소음피해 보상의 대상이 되는 군용항공기에 시험평가용 시제기도 포함함으로써 시제기의 시험평가로 인한 소음피해를 보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군과 주민 간의 갈등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봄.

### [최근 5년간 시제기 운용현황]

(단위 : 소티)

| 연도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 시험비행 횟수<br>(사천공항, KF-21 시제기) | -    | 64   | 356  | 630  | 534  |

□ 다만, 전투기 개발 사업은 정부 예산이 투입되지만 양산 단계 이후부터는 민간업체에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이며, 시제기의 시험비행은 전투기 양산 전 성능 측정을 위한 것으로 민간업체의 영리를 위한 사업 단계 중 하나로 볼 수 있음.

이에 시험비행으로 인한 소음 피해 보상을 국가 예산으로 실시함에 있어 피해를 가한 주체와 보상을 하는 주체가 달라지게 되므로 이 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봄<sup>2)</sup>.

-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는 군에 도입되기 전 시험평가 중인 시제기로 인한 소음에 대해 국가 예산으로 보상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시험평가용 항공기에도 군용항공기와 동일한 의무(이·착륙 절차 개선 및 야간훈련 제한 등)를 부과할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임.

|              |
|--------------|
| 문 의 처        |
| 02)6788-5309 |

---

2) 안흥시험장의 경우 방위산업진흥회 예산을 이용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지역상생자금의 형태로 지원하고 있음.